

조선왕조의 읍지연구 (朝鮮王朝의 邑誌研究)

文化財管理局 金 田 培

目	次
I. 序論	IV. 邑誌의 性格 및 內容
II. 官撰地志의 編纂經緯	V. 邑誌의 活用方案
III. 邑誌編纂經緯	VI. 結論

I. 서론(序論)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읍지(邑誌)는 지방(地方) 각읍(各邑)의 지지(地志)인 동시(同時)에 지방사(地方史)이며, 행정(行政)의 중요(重要) 근거자료(根據資料)로도 활용(活用)되었다. 특(特)히 한말(韓末)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책자료(定策資料)로서의 비중(比重)이 컸던 행정사례집(行政事例集)이기도 하다.

종래(從來)의 국학연구(國學研究)란 중앙정부(中央政府) 중심(中心)의 연구(研究) 위주(爲主)이었고 지방(地方)에 관(關)한 연구(研究)는 자료(資料)의 부족(不足)으로 거의 도외시(度外視)되었음을 감안(勘案)하면 지방(地方)지가 지니고 있는 사료적(史料的) 가치(價値)는 더욱 지대(至大)하게 평가(評價)되는 것이다.

더욱이 방지(方志)인 읍지(邑誌)란 어떤 특별지역(特別地域)에 있어서의 인간(人間)과 자연(自然)과의 관계(關係)에서 빚어진 역사적(歷史的)이고 발생적(發生的)인 제반사항(諸般事項) 즉(卽) 연혁(沿革)·호구(戶口)·산업(產業)·군사(軍事)·교통(交通)·통신(通信)·학교(學校)·인물(人物)·고적(古蹟)·풍속(風俗) 및 제반행정(諸般行政)·경제(經濟)·사회제도(社會制度)등에 관(關)한 사항(事項)이 소상(昭詳)히 수록(收錄)되어 있어, 이에 관(關)한 연구(研究)에 읍지(邑誌)가 지니는 자료적(資料的) 가치(價値)는 매우 크다. 또 어느 역사적(歷史的)인 시점(時點)에서 그 지방(地方)의 어떤 상황(狀況)을 연구(研究)하는데 있어서도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한 자료(資料)로서의 성격(性格)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읍지(邑誌)가 지금까지 많이 전(傳)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多幸)한 일이나, 이 중요(重要)한 읍지(邑誌)의 자료적(資料的) 가치(價値)가 망각(忘却)된 채, 소수(小數)의 학자(學者)에 의(依)해서만 부분적(部分的)으로 이용(利用)되었을 뿐, 적극적(積極的)으로 활용(活用)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 수량(數量)과 소재(所在) 조차도 완전(完全)히 파악(把握)하지 못하여 이의 종합적(綜合的)인 조사(調査)가 시급(時急)하게 요청(要請)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따라서, 본(本) 연구(研究)는 우선 중요(重要) 관찬지지(官撰地志) 편찬경위(編纂經緯)를 그 성격(性格)과 체례(體例)에 따라 사단계(四段階)로 구분고찰(區分考察)하고, 그것이 읍지편찬(邑誌編纂)에 미친 영향(影響)을 구명(究明)함과 아울러 해자료(該資料)를 비교적(比較的) 포괄적(包括的)으로 수장(收藏)하고 있는 장서각(藏書閣)과 규장각(奎章閣)의 현존읍지(現存邑誌)를 중심(中心)으로 편찬경위(編纂經緯) 및 내용(內容)을 살펴서, 제반(諸般) 제도사적(制度史的) 연구(研究)를 위(爲)한 활용방안(活用方案)을 강구(講究)함으로써 읍지(邑誌)의 사료적(史料的) 가치(價値)를 부각(浮刻)시키고자 한다. 또한 선학(先學)들에 의(依)해 전(全)혀 연구(研究)되지 않은 부분(部分)을 구명(究明)함과 아울러 종래(從來) 발표(發表)된 것 중 착오(錯誤)가 있는 부분(部分)에 대(對)하여도 검토(檢討)하여 이를 시정(是正)하고자 한다.

II. 관찬지지(官撰地志)의 편찬경위(編纂經緯)

조선왕조(朝鮮王朝) 관찬지지(官撰地志) 편찬경위(編纂經緯)를 그 성격(性格)과 체례(體例)에 따라 4단계(段階)로 구분(區分)하였으니,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의 편찬사업(編纂事業)에 착수(着手)하여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를 거쳐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가 편찬(編纂)된 때 까지를 제일단계(第一段階),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의 편찬(編纂)에 착수(着手)하여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거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출간(出刊)을 보게된 때 까지를 제이단계(第二段階),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편찬(編纂)에 착수(着手)하여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가 인출(印出)된 때 까지를 제삼단계(第三段階), 고종조(高宗朝)의 각군(各郡) 읍지(邑誌)의 편찬사업(編纂事業)을 제사단계(第四段階)로 하였다.

이를 좀더 상술(詳述)하면, 제일단계(第一段階)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가 근간(根幹)이 되며, 그 체례(體例)는 지리(地理), 역사(歷史), 산업(産業), 군사(軍事), 교통(交通)등이 지역별(地域別)로 간략(簡略)하게 서술(敘述)된 자연(自然)·인문지리(人文地理)의 전장류(典章類)이다.

제이단계(第二段階)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은 「여지승람(輿地勝覽)」이 근간(根幹)이 되며, 그 체례(體例)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나 내용(內容)에 있어서 제영(題詠)·인물(人物)·충의(忠義)·효열(孝烈)·교원(敎院)과 그동안의 변동사항(變動事項)등을 추가(追加)하여 승유문치(崇儒文治)의 지방(地方)적 특징(特徵)을 구현(具現)하고 또한, 팔도총도(八道總圖)를 비롯한 도별지도(道別地圖)를 첨부(添附)하여 지리서(地理書)로서의 성격(性格)을 비로소 구비(具備)하였다.

제삼단계(第三段階)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은 종래(從來)의 전장지서격체례(典章之書格體禮)를 대폭(大幅) 개편하여 회통지서격(會通之書格)인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체례(體例)로 편찬(編纂)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체례(體例)에 있어 전자(前者)는 지역별(地域別) 아래에서 항목별(項目別)로 벌리고 있으나 후자(後者)는 주제중심(主題中心)으로 편성(編成)하고 있음이 그 특징(特徵)이다.

제사단계(第四段階)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은 고종조(高宗朝)의 각군(各郡) 읍지(邑誌)가 중심(中心)이 되며, 고종(高宗)때에 오차(五次)에 걸쳐 대대적(大大的)으로 실시(實施)하였던, 고종(高宗) 5년(동치 7年, 1868), 동 8년(동치 10年, 1871), 동 11년(동

치(同治) 13年, 1874), 동(同) 32年(1895) 및 광무(光武) 3年 (1899)의 읍지편찬사업(邑誌編纂事業)이 바로 이에 해당(該當)된다. 읍지(邑誌)라면 대체로 여지승람(輿地勝覽)의 체례(體例)를 본따고 있으나, 고종조(高宗朝)에 편찬(編纂)된 읍지(邑誌)는 정책자료(政策資料)인 사례중심(事例中心)으로 엮였음이 그 두드러진 특징(特徵)이다.

A.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체례(體例)의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

①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본서(本書)는 세종(世宗) 6年(1424) 11月 대제학(大提學) 변수량(卞秀良)에게 지지(地志) 및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연혁(沿革)을 찬진(撰進)하도록 하명(下命)한데서부터 편찬사업(編纂事業)이 비롯되었는데¹⁾, 대제학(大提學) 변수량(卞秀良)의 계언(啓言)에 의(依)하면, 변수량(卞秀良) 자신(自身)과 탁신(卓愼), 윤회(尹淮), 맹사성(孟思誠), 권진(權軫)등이 편찬(編纂)을 담당(擔當)하여 세종(世宗)의 하명(下命)이 있는지 8年만에 비로소 그 완성(完成)을 본 것이 된다²⁾ 동서(同書)는 현존본(現存本)이 없어 매우 유감(有感)스러우나 조선왕조(朝鮮王朝) 최초(最初)의 관찬지지(官撰地志)라는 점(點)에서 그 비중(比重)이 크며, 또 15세기(世紀) 조선(朝鮮)의 지리(地理)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저본(底本)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評價)된다.

②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본서(本書)는 세종(世宗) 6年 변수량(卞秀良)에게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의 편찬(編纂)을 하명(下命)한데서부터 부수(附隨)되는데, 동년(同年)(1424, 영락(永樂) 23年) 갑진(甲辰) 12月³⁾ 호조(戶曹)에 명(命)하여 각도(各道)의 주부군현(府州郡縣)의 지지(地志)를 편찬(編纂)하여 춘추관(春秋館)에 전송(轉送)하도록 하였다.

동서(同書)의 서문(序文)에 보면⁴⁾ 지지편찬(地志編纂)이 본시 호조(戶曹)의 소관(所管)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내용(內容)은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역대관호(歷代官號), 읍명(邑名), 연혁(沿革) 및 읍(邑)의 이합(離合) 과정(過程)을 자세(仔細)히 추핵(推覈)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령호조이관각도(令戶曹移關各道)」라는 문구(文句)로 보아 전국팔도(全國八道)에 동일(同一)한 내용(內容)의 지시(指示)를 동시(同時)에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익년(翌年)(세종(世宗) 7年, 홍희원년(洪熙元年)) 6月 3日 예조(禮曹)에 다시 수교(受敎)하였는데, 이번에는 진일보(進一步)해서 일정(一定)한 규칙(規式)에 따라 지지(地志)를 편찬(編纂)하도록 각도(各道)에 재지시(再指示)하였다.⁵⁾ 이때에는 본서(本書) 편찬(編纂)의 주관(主管)이 예조(禮曹)로 이관(移管)되었고, 한편 현존(現存)하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로 미루어 생각하면 당시(當時)에 표시(表示)된 규칙(規式)은 12항목(項目)에 달(達)하며 기재례(記載例)까지 상세(詳細)하게 열거(列舉)하여 통첩(通牒)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통첩(通牒)에 따라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는 만일년후(滿一年後)인 세종(世宗) 7年 12月에 완성(完成)되었다.⁶⁾

이와 동시(同時)에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와 같은 각도(各道) (8도(道))의 지리지(地理志)가 작성(作成)되었음이 분명(分明)하나 현재(現在)에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만이 전존(傳存)한다. 또 그 당시(當時) 원본(元本)은 춘추관(春秋館)에 송부(送付)하고, 부분일부(副本一部)를 작성(作成)하여 경상감영(慶尙監營)에 비치(備置)하였음을 서문(序文)에서 밝히고 있다.⁷⁾ 현존(現存)하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는 경상

감영(慶尙監營)에 비치(備置)했던 부분(副本)이며, 그것은 본서(本書)의 서문(序文) 끝의 여백(餘白)에 「본영경주부치(本營慶州府置)」라 대서(大書)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경상감영(慶尙監營) 경주부(慶州府)에 비치(備置)하였던 부분(副本)이라는 것이 고증(考證)될 뿐 아니라 경제(經濟), 진양세가(晉陽世家), 하연(河淵), 연정(淵靜)등의 인기(印記)가 있어 후사본(後寫本)이 아닌 진본(眞本)임을 알 수 있다.

③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세종실록(世宗實錄)의 편찬(編纂)은 동서(同書)의 부록(附錄)에 의(依)하면 정인지(鄭麟趾)가 총재관(總裁官)이 되어 문종(文宗) 2년(1452) 3월에 시찬(試撰)해서 단종(端宗) 2년(1454) 3월에 찬진(撰進)했다.

본(本) 실록(實錄)은 163권(卷)으로 편성(編成)되었는데 1권(卷)부터 127권(卷)까지는 재위(在位) 32년간(年間)의 사실(史實)을 편년체(編年體)로 엮었으며, 128권(卷)부터 163권(卷)까지는 여러가지 지(志)를 추가(追加)하였고 권말(卷末)에 찬수관(撰修官)의 명단(名單)을 부록(附錄)하였다. 지중(志中) 148권(卷)부터 155권(卷)까지가 지리지(地理志)이다. 이는 모두 8권(卷) 8책(冊)으로서 매도(每道)에 일권(一卷)씩 배당(配當)되었으며, 15세기(世紀)의 조선지리(朝鮮地理)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역사지리(歷史地理) 내지(乃至)는 인문지리(人文地理)의 보전(寶典)이라 할 수 있다. 동서(同書)는 세조(世祖) 11년(1465) 양성지(梁誠之)의 계(啓)에 의(依)해서 주자(鑄字)로 인출(印出)하기 시작(始作)하여⁸⁾ 성종(成宗) 4년(年)(1473) 계사(癸巳)에 완료(完了)되었으며⁹⁾, 태백산본(太白山本)과 정족산본(蔘足山本)이 현존(現存)하고 있다.

또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저본(底本)으로 해서 작성(作成)한 것이며 그 내용(內容)은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의 바탕에 그 동안의 변동사항(變動事項)만을 추가(追加)한 것이다¹⁰⁾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저본(底本)을 고증(考證)하기 위(爲)하여 양서(兩書)에 수록(收錄)된 인구(人口)¹¹⁾와 경상좌(慶尙左)·우도(右道)의 수군도안무처(水軍都安撫處), 수어처(守禦處)의 제반사항(諸般事項)¹²⁾을 비교(比較)한 결과(結果) 내용(內容)이 일치(一致)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以上)에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내용(內容)과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의 내용(內容)이 유사(類似)함을 알 수 있으니,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그 서(序)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저본(底本)으로 했음이 분명해졌다.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를 작성(作成)하여 춘추관(春秋館)에 송부(送付)한 것이 세종(世宗) 7년(年)(1425)이며, 권진(權軫), 신장(申樞)등이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찬진(撰進)한 것이 세종(世宗) 14년(年)(1432)이니,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는 세종(世宗) 6년(1424) 변수량(卞秀良)에게 지지(地志) 및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연혁(沿革)을 찬진(撰進)토록 하명(下命)한 다음해에 완성(完成)을 보았고,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가 완성(完成)된지 7년후(年後)에 편성(編成)되었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은 단종(端宗) 2년(1454)¹³⁾에 찬진(撰進)되었으니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가 편성(編成)된지 29년 후(後)에 이루어졌다.

한편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가 전(傳)하여 지지(地志)는 많고 있으나 현존(現存)하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편찬체제(編纂體制) 및 내용(內容)으로 미루어 보아 그 수록범위(收錄範圍)의 대강(大綱)은 파악

(把握)할 수 있으리라 본다.

삼국사기지리지(三國史記地理志)가 국토(國土)의 위치(位置)와 연혁(沿革)에 치중(置中)되어 각명(各名)의 설명(說明)과 나열(羅列)에 불과(不過)한 반면(反面) 상거(上擧) 각(各) 지리서(地理書)들은 자연(自然)과 인문(人文) 양면(兩面)에 걸친 상세(詳細)한 기록(記錄)으로서, 15세기(世紀) 한국(韓國)을 연구(研究)하는데 하나의 중요자료(重要資料)이나, 지리적(地理的)인 여러 사실(事實)을 나열(羅列)하였을 뿐, 상호관계(相互關係)나 범주(帆柱)를 벗어나지 못한다.¹⁴⁾

그러나 건국이래(建國以來) 국세(國勢)가 안정(安定)되고, 국토(國土)가 확정(確定)됨에 따라, 사계(四界)의 구분(區分)과 주군(州郡) 연혁(沿革)의 변경과정(變更過程) 및 제반(諸般) 행정자료(行政資料)를 모집(募集)하여 집대성(集大成)하였음은 당시(當時) 국력(國力)의 실체(實體)를 파악(把握)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B. 여지승람(輿地勝覽) 체례(體例)의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

①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가 완성(完成)된 익년(翌年)인 세조원년(世祖元年)(1455)부터 지지편찬(地志編纂)은 다시 계속(繼續)되었으니, 이미 단종(端宗) 2년(1454)에 찬진(撰進)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결략(闕略)된 미비점(未備點)을 증보(增補)하기 위한 작업(作業)에서부터 시작(始作)되었는데, 세조원년(世祖元年) 8월에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양성지(梁誠之)에게 지리지(地理志)의 편찬(編纂)과 지도(地圖)의 작성(作成)을 명(命)하여¹⁵⁾ 착수(着手)된 본서(本書)는 성종(成宗) 9년(1478) 무술(戊戌) 정월(正月) 6일 양성지(梁誠之)에 의(依)해 찬진(撰進)되었다¹⁶⁾. 당시(當時) 본서(本書)는 인출(印出)되지 못하고, 그후(後) 편성(編成)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흡수(吸收)되었다. 또 성종(成宗) 13년(1482)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의 상소(上疏)에 의(依)하면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에는 8도(道)의 주군도(州郡圖)와 8도(道)의 산천도(山川圖)등이 유입(流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본서(本書)는 아직 필자(筆者)가 접(接)하지 못하였으나 후술(後述)할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에 의(依)하여, 그 내용(內容)의 일부(一部)를 짐작(斟酌)할 수 있고,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도 양성지(梁誠之) 소찬(所撰)이니¹⁸⁾, 이 두 자료(資料)에 의(依)하여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의 수록범위(收錄範圍)와 내용(內容)을 넉넉히 추찰(推察)할 수 있다.

②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지지편찬(地志編纂)은 역조(歷朝)에 걸친 계속적(繼續的)인 사업(事業)이었다. 상술(上述)한 바도 있거니와 조선조(朝鮮朝) 초기(初期)의 지지작업(地志作業)이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편성(編成)으로 일단락(一段落)되었으나, 미비(未備)한 점(點)을 보완(補完)하기 위(爲)하여 세조원년(世祖元年)에 양성지(梁誠之)에게 지지편찬(地志編纂)을 명(命)하였고, 다시 예종원년(睿宗元年)(1469) 정월(正月) 제도(制度)에 미비(未備)한 사항(事項)을 보충(補充)하라는 내용(內容)의 관음(觀音)을 내렸다¹⁹⁾.

이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의 속찬(續撰)으로 예종원년(1469) 3월에 편성(編成)되었으니, 관음(觀音)이 내린지 3개월(個月)만에 완성(完成)된 것이며, 동서(同書)는 5부(部)가 작성(作成)되어 일부(一部)는 경사(京師)

에 전상(轉上)하고 사부(四部)는 각각(各各) 사계(四界) 즉 경주도(慶州道), 상주도(尙州道), 안동도(安東道), 보주도(普州道)에 분치(分置)하였던 바²⁰, 현재(現在) 유일본(唯一本)이라 인정(認定)되는 서울대학교(大學校) 소장본(所藏本)은 사계(四個)의 부분(副本)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의 편찬(編纂)을 명(命)한 것이 세조원년(世祖元年)(1455)이고, 제도(諸道)에 「속찬전지(續撰前志)」하라는 관음(觀音)을 내린 것이 예종원년(睿宗元年)(1469)이니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를 착수(着手)한지 14년후(年後)의 일이요, 동서(同書)의 완성(完成)은 성종(成宗)10[9]년(1478) 무술(戊戌)에 이루어졌으니 착수(着手)한지 23년만에 성편(成篇)되었고 관음(觀音)을 내린지 9년(年)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③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본서(本書)의 편찬(編纂)은 성종 7년(1478) 12월에 하명되었다. 즉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양성지(梁誠之)의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에 동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詩文)을 첨재(添載)하는 작업(作業)에서부터 시작(始作)하였는데, 노사신(盧思愼), 이파(李坡), 서거정(徐居正)이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찬진(撰進)하다, 성종(成宗)이 그 자리에서 노사신(盧思愼)등에게 동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詩文)을 모아 양성지(梁誠之) 소찬(所撰)의 지리지(地理志)(주(註)·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에 첨재(添載)하도록 하라고 하명(下命)하였다²¹.

한편, 서거정(徐居正)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서(序)에는 동서(同書)의 편찬(編纂)이 성종(成宗)10[9]년 무술(戊戌)에 착수(着手)된 것으로 기술(技術)하였으나²², 실(實)은 성종(成宗) 7년에 이미 왕명(王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後) 본서(本書)는 성종(成宗) 12년(1481) 신축(辛丑) 4월(月)에 찬성(贊成)된 것으로 기록(記錄)되어 있으며, 경도(京都)의 앞에 총도(總圖)를 수록(收錄)하고 각도(各道)의 앞에 각각(各各) 지도(地圖)를 붙여서 양경(兩京) 팔도(八道)의 체제(體制)로 엮어 50권(卷)을 선사(繕寫)해서 진헌(進獻)하였다²³. 이는 성종실록(成宗實錄) 13년 기사(記事)에도 동서(同書)를 찬진(撰進)한 익년(翌年)에 장황(粧潢)이 완료(完了)되었음을 말하여 준다²⁴. 그러나 국조보감(國朝寶鑑)²⁵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성종(成宗) 11년 11월 찬성(贊成)된 것으로 기록(記錄)되어 있어, 동서(同書)의 서(序)와 1년 차이(差異)가 있으므로 이를 구명(究明)하여야 되는데,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참조(參照)하면, 성종(成宗) 11년에 완성(完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²⁶, 그 내용(內容)중 「……命盧思愼等倣其例成書(명노사신등방기례성서)」와 「賜名輿地勝覽印布中外(사명여지승람인포중외)」라는 문구(文句)로 미루어보아 「성종(成宗)11년 11월」은 인간(印刊)을 상재(上梓)받은 년월(年月)을 말함이며²⁷,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의 례(例)를 본따서 성서(成書)하여 보찰(寶刹)로 왕(王)에게 진헌(進獻)한 것은 5개월(個月) 후(後)인 성종(成宗) 12년 4월로 보아야 타당(妥當)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當時)의 인본(印本)을 찾아 볼 수 없어 인간여부(印刊與否)에 대(對)하여는 확인(確言)할 수 없다.

이렇게하여 50권(卷)으로된 거질(巨帙)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 일단(一旦) 찬진(撰進)되었으나, 그뒤 개수작업(改修作業)이 계속(繼續)되어 성종(成宗) 17년 (1486) 12월에는 김종직(金宗直)등에 의(依)한 제일차(第一次) 수교(讎校)가 완료(完了)되어 5권(卷)이 추가(追加)된 55권(卷)으로 증보(增補)되었는바²⁸ 이것은 성종실록(成宗實錄) 18년 기사(記事)²⁹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김종직(金宗直)이 교정(校正)이 완료(完了)되었음을 계(啓)하자³⁰ 31) 「명인신찬여지승람(命印新撰輿地勝覽)」이라 한것으로

보아 이것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제일차(第一次) 교정본(校訂本)임을 입증(立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뒤에도 동서(同書)의 개수작업(改修作業)은 계속 논의(論議)되어 동년(同年) 4월 왕(王)은 김종직(金宗直)의 계(啓)에 따라 착오(錯誤)가 있는 부분(部分)을 개정(改正)하도록 지시(指示)하였다.³²⁾

수교작업(修交作業)은 계속(繼續)되어, 연산군(燕山君) 3년(1497)에도 성견(成愼), 이덕숭(李德崇), 임사홍(任士洪)등이 수교(修交)의 명(命)을 받고 경복궁(景福宮)의 교서관(校書館)에 개국(開局) 시행(施行)하였으며, 이는 연산군(燕山君) 3년(年)에 착수(着手)하여 동(同) 5년(1499) 10월에 완성(完成)되었는데, 이것이 제이차(第二次) 교정작업(校正作業)이 된다³³⁾

이상(以上)에서 서술(敘述)한 것을 정리(整理)해 보면, 성종(成宗) 7년(1476) 7월 노사신(盧思愼)에게 동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詩文)을 양성지(梁誠之) 소찬(所撰)의 지리지(地理志)에 첨재(添載)할 것을 명(命)한 이래(以來) 성종(成宗) 11년에 완성(完成)하여 동(同) 12년(1481)에 서거정(徐居正)등이 성종(成宗) 17년에 수교(修交)를 가(加)하여 동 18년(1487)에 진헌(進獻)한 것이 제일차(第一次) 교정본(校訂本)이고, 그 뒤 성견(成愼)등이 연산군(燕山君) 3년(1479) 책보(冊補)에 착수(着手)하여 동(同) 5년(1481)에 완성(完成)한 것이 제이차(第二次) 교정본(校訂本)이 된다.

그러나 원본(原本)(권(卷)50)은 「인포중외(印布中外)」³⁴⁾ ³⁵⁾라 하였으나 전(傳)하여지지 않고 제일차(第一次) 교정본(校訂本) 55권(卷)인 을해자본(乙亥字本) 일책(一冊)³⁶⁾이 전(傳)하고 있으며, 제이차(第二次) 교정본(校訂本)도 적시(赤是) 일책(一冊)이 전(傳)하고 있을 뿐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 전(傳)하여지지 않는 이유(理由)는 오랜동안 병화(兵火)등의 재해(災害)로 인(因)하여 일실(逸失)된 것도 많고 또 여지류(輿地類)의 도서(圖書)는 일반(一般)에게는 별로 필요(必要)한 자료(資料)가 아니었으므로, 발간부수(發刊附隨)가 적었으리라는 추측(推測)도 가능(可能)하나, 그것보다도 여지도서류(輿地圖書類)의 사장(私藏)을 금지(禁止)했던 사실(事實)에 기인(基因)한다고 생각되며³⁷⁾, 또 연산군(燕山君) 11년 7월에는 정식으로 여지승람류도서(輿地勝覽類圖書)의 사장(私藏)을 금지(禁止)시켰으니³⁸⁾, 이라고 보면 널리 세전(世傳)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본서(本書)의 편찬(編纂)은 중종(中宗) 23년(1528년)부터 시작(始作)된다. 즉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1,2차(次) 수교(讎校)가 완료(完了)된 후(後)에도 증보작업은 계속(繼續)되었으니, 중종(中宗) 23년에 이르러 대제학(大提學) 이행(李荇)에게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구질(舊帙)(주(註)·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보유(補遺)를 첨록(添錄)하여 신증(新增)으로 하고 별도(別途)로 서문(序文)을 작성(作成)하여 첨록(添錄)하라고 하명(下命)한데서부터 본서(本書)의 편찬(編纂)이 착수(着手)되었으며³⁹⁾, 관제(官制)의 변이(變易), 군현(群賢)의 이해(理解), 효열지행(孝列之行), 시문지화(詩文之華)등을 고□개(□改)하여 채록(採錄)하지 못한것을 고핵부집(考覈哀集)하였던 것이다⁴⁰⁾

□개작업(□改作業)은 계속(繼續) 추진(推進)되어 중종(中宗) 25년(1530) 8월 5권(卷)의 속편(續編)을 완성(完成)하였으나, 별록(別錄)으로 하면 통서(統緒)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첨입(添入)하여 중종(中宗) 26년 (1531) 6월에 인출(印出)하였으며⁴¹⁾ 중종실록(中宗實錄)에도 중종(中宗) 27년 이전(以前), 동(同) 16년에

인출(印出) 되었음을 입증(立證)하여 주고 있다.⁴²⁾

이렇게 해서 일단(一旦)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인간(印刊)되었다. 그러나 동서(同書)에 대(對)하여도 결유(闕遺)가 많다하여 그후(後) 논의(論議)가 계속(繼續) 되었으나, 증보간행(增補刊行)은 결실(結實)을 보지 못하고 미수(未遂)에 그치고 말았다. 본서(本書)에 대(對)한 증보논의(增補論議)는 중종(中宗) 27년부터 시작(始作)되며⁴³⁾, 동(同) 2월에는 중종(中宗)께서 신간여지승람(新刊輿地勝覽)에 종친부(宗親府)의 기재(記載)가 누락(漏落)되었다하여 개간시(改刊時)에는 속재(續載)하는 것이 가(可)하다고 지시(指示)한 사실(事實)도 있다.⁴⁴⁾ 또 숙종(肅宗) 13년에 이르러 김석위(金錫胃)에게 증보개간(增補改刊)의 업무(業務)를 주관(主管)하도록 한 바 있고⁴⁵⁾, 숙종(肅宗) 25년 좌의정(左議政) 최석정(崔錫鼎)이 동서(同書)의 증보(增補)를 진청(秦請)하였는데, 왕(王)의 재가(載可)를 받았을 뿐⁴⁶⁾ 미수(未遂)에 그치고 말았다⁴⁷⁾. 숙종(肅宗) 26년 3월⁴⁸⁾과 6월⁴⁹⁾에 동서(同書)의 속록(續錄)이 다시 논의(論議)되 바 있으나, 동(同) 27년(1701) 일단(一旦) 중지(中止)되었다⁵⁰⁾. 이후 여지승람(輿地勝覽)의 증보작업(增補作業)은 아주 중지(中止)된 듯 하며, 다만 정조(正祖) 13년 규장각(奎章閣)에 명(命)하여 운각(芸閣) 담당(擔當)으로 제도(諸道)의 읍지(邑誌)까지 부취(裒聚)하여 근본적(根本的)으로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속성(續成)하려 했으나, 이것 또한 미성(未成)에 그치고 말았다.⁵¹⁾

이와 같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중종(中宗) 23년 이행(李荇)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첨록(添錄)을 찬집(撰集)하기 시작(始作)한데서부터 비롯되어 중종(中宗) 26년 6월에 5권(卷)의 첨록(添錄)을 성편(成編)하므로서 일단(一旦) 완료(完了)되어 인간(印刊)한 바 있다. 그 후(後) 본서(本書)에 대(對)하여는 책보작업(冊補作業)만 간헐적(間歇的)으로 계속(繼續)되었을 뿐 인간(印刊)을 보지 못하였으며, 정조(正祖) 13년(1789)까지 증보작업(增補作業)의 흔적은 보이나 성책(成冊)되지 못하였다. 이즈음의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은 영조(英祖) 45년부터 찬수(纂修)하기 시작(始作)한 문헌비고(文獻備考)의 편찬사업(編纂事業)에만 주력(主力)하였을 것이 분명(分明)하다.

C. 문헌비고(文獻備考) 체례(體例)의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

제삼단계(第三段階)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편찬(編纂)의 착수(着手)에서부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출간(出刊)까지를 말하며, 이것은 영조(英祖) 45년(1769)에서 융희(隆熙) 2년(1908)에 이르는 동안을 말한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는 영조(英祖)의 명찬서(命撰書)이며, 동서(同書)는 3차(次)에 □(□)하여 작업(作業)이 실시(實施)된 바 있다. 즉(卽) 영조(英祖) 45년(1769)에 착수(着手)해서 동(同) 46년(1770)에 13문(門) 100권(卷)을 일단(一旦) 완성(完成)하여 동년(同年) 8월에는 40책(冊)으로 인간(印刊)하였는데, 이것이 제일차(第一次) 작업(作業)이며, 또 정조(正祖) 6년(1782)에 증보작업(增補作業)이 착수(着手)되어 동(同) 20년(1769)에 20고(考) 240책(冊)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가 완성(完成)된 바 있는데 비록 인간(印刊)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이차(第二次) 수보작업(修補作業)이라 한다면, 융희(隆熙) 2년(1908)에 증보작업(增補作業)이 완료(完了)되어 15고(考) 250권(卷)을 성편(成編)하고, 50책(冊)으로 인간(印刊)한 것이 곧 제이차(第二次) 작업(作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차례에 걸친 작업(作業)은 영조(英祖) 45年(1769)에 시작(始作)하여 옹희(隆熙) 이년(二年)(1908)까지 139년여(年餘)에 이르는 동안의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이라 하겠다.

이하(以下)에서 관계기록(關係記錄)을 중심(中心)으로 각지지(各地志)의 편찬경위(編纂經緯)를 개관(概觀)하고자 한다.

①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동서(同書)의 편찬(編纂)은 영조(英祖) 45年(1769)부터 시작(始作)되었는데, 이는 중국(中國)의 문헌통고(文獻通考)를 모방(模倣)하여 간행(刊行)하도록 하명(下命)된 것이다⁵². 동서(同書)의 편찬목적(編纂目的)은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체례(體例)를 모방(模倣)하여 회통지서(會通之書)의 편찬(編纂)을 도모한 것이다⁵³. 이리하여 영조(英祖) 46年 5월에 13문(門) 100권(卷)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완성(完成)하였는데, 당시(當時) 편찬(編纂)은 당상(堂上) 10인(人)과 낭청(郎廳) 9인(人)이 담당(擔當)하였으며, 완성(完成)에 미쳐서는 시(時)·원임대신(原任大臣)으로 하여금 고정(考正)을 담당(擔當)하게 하였다⁵⁴.

또 본(本) 사업(事業)은 왕(王)의 관심(關心)이 지대(至大)하여 독촉(督促)이 매우 심(甚)하였던 모양이었으며⁵⁵, 편찬방법(編纂方法)은 몇개의 분야(分野)로 분류담당(分類擔當)하여 각(各) 분야별(分野別)로 고정(考正)까지 완료(完了)되면 제신(諸臣)을 모아 삼호난상(參互爛商)하여 한 책(冊)으로 묶어 완성(完成)하고자 한 것이다.

일단(一旦) 본서(本書)가 완성(完成)된 후(後)에도 왕(王)은 경연(經筵)에서 여가(餘暇)가 있을 때마다 부분적(部分的)인 검토(檢討)를 가(加)하였던 것이다⁵⁶

또 왕(王)이 이렇듯 지대(至大)한 관심(關心)을 가졌던 사업(事業)이었으므로 신경준(申景濬)등에게는 논공행상(論功行賞)도 있었으며 문헌통고(文獻通考)의 편찬사업(編纂事業)이 신경준(申景濬)의 저서(著書) 「강역지(疆域志)」의 편찬(編纂)을 계기(契機)로 발론성취(發論成就)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따라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모방(模倣)하였으므로 종래(從來)의 지지서류(地志書類)와 체례(體例)는 다르지만 상기(上記)와 같은 편찬유래(編纂由來)나 그 내용(內容)의 구성비(構成比)로 보아 여지고(輿地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部門)도 지지(地志)서와 매우 깊은 관련성(關聯性)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위(經緯)로 영조(英祖) 46年 5월에 완성(完成)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는 동년(同年) 8월에 40책(冊)으로 인간(印刊)되므로서 비고(備考) 편찬사업(編纂事業)의 전과정(全過程)이 일단락(一段落)되었으며, 여기에서도 감인(監印)에 공(功)이 있는 자(者)들에게는 응분(應分)의 상재(賞賚)가 있었다⁵⁸. 특히 비고(備考)의 편찬(編纂)이 신경준(申景濬)의 「강역지(疆域志)」에서 기인(基因)된 것으로 보아 여지고(輿地考)의 편찬작업(編纂作業)은 응당 당대(當代)의 실학자(實學者) 신경준(申景濬)에게 전담(專擔)시켰으리라고 미루어 생각할 수 있으며, 본서(本書)가 종래(從來)의 지지서류(地志書類)와 같이 순수(純粹)한 지지전문서(地志專門書)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지고(輿地考)」 일문(一門)만으로도 조선왕조(朝鮮王朝) 역대(歷代)의 다른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과 비견(比肩)할 수 있는 위업(偉業)이라 할 수 있다. 특(特)히 고증학적(考證學的) 지리학자(地理學者)였던 신경준(申景濬)의 주관(主管)으로 이루어졌다 함은 그 내용가치(內容價值)를 더 크게 평가(評價)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왕(既往)의 지지서(地志書)의 내용(內容)이 지역별(地域別)로 나열(羅列)되었

음에 반(反)하여, 동서(同書)는 주제별(主題別)로 항목(項目)을 설정(設定)하여 일실성(一實性)있게 배열(配列)함으로써 체제상(體制上)의 일대변혁(一大變革)을 가져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여지고(輿地考)가 가지는 일대(一大) 특징(特徵)이다.

② 증정문헌비고(證訂文獻備考)

동서(同書)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추보(追補)한 것인 바 추보경위(追補經緯)를 간단히 살펴보면 증정문헌비고(證訂文獻備考)는 정조초(正祖初)에 이만운(李萬運)이 왕명(王命)에 의(依)하여 보속(補贖)하였으며⁵⁹⁾, 정조(正祖) 6년(1782)에 추보작업(追補作業)이 착수(着手)되어 종전(從前)보다 7고(考)를 증보(增補)하여 20고(考)를 완성(完成)하였으나, 간행(刊行)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정조(正祖) 6년에 착수(着手)한 비고(備考)의 추보작업(追補作業)은 정조(正祖) 7년(1783) 실록기사(實錄記事)⁶⁰⁾와 동왕(同王) 11년(1787) 기사(記事)⁶¹⁾, 동왕(同王) 14년(1790)기사(記事)⁶²⁾에 의(依)하면 주(主)로 이만운(李萬運)이 작업(作業)을 주관(主管)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작업(作業)은 정조(正祖) 6년에 착수(着手)한지 9년만인 동왕(同王) 14년에는 일단(一旦) 성고(成藁)하였음을 알 수 있고, 총(總) 20고(考) 240권(卷)으로서 종전(從前)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보다 문목(門目)은 86편(編), 권수(卷數)는 146권(卷)이 증보(增補)되었고⁶³⁾ 추보(追補)된 7고(考)는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예문(藝文)·씨족(氏族)·익호(諡號)·조빙(朝聘)이었다⁶⁴⁾. 비고(備考)의 추보작업(追補作業)이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정조(正祖) 14년에 일단(一旦) 완수(完遂)되었고, 증정문헌비고(證訂文獻備考)가 이만운(李萬運)에 의(依)하여 일단락(一段落)된 것은 정조(正祖) 20년(年)에 이르러서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군서표기(群書表記)에도 「열십여세(閱十餘歲) 편시조완(編始粗完)」이라고 하였듯이, 정조(正祖) 6년에 착수(着手)한 이후(以後) 10여세(餘歲)이면 동(同) 14년 이후(以後)에도 계속(繼續) 추보작업(追補作業)이 진행(進行)되었을 것으로 여겨짐에 그 간(間) 도저히 추보(追補)와 완전무결(完全無缺)한 편성(編成)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조(正祖) 20년에 7고(考)가 추보(追補)된 240권(卷)의 증정문헌비고(證訂文獻備考)가 완성(完成)되어 그 권서(卷序)과 서명(書名)이 확정(確定)되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도 「비고(備考)」의 추보작업(追補作業)은 여전히 진행(進行)되었다. 이에 관(關)하여는 후술(後述)하겠지만, 이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수(卷數)에도 가감(加減)의 변동(變動)이 있었고, 사본(寫本)인 채 간포(刊布)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요(要)컨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추보작업(追補作業)은 정조(正祖) 6년(年)부터 이만운(李萬運)의 주관하(主管下)에 착수(着手)되어 동왕(同王) 14년에 일단(一旦) 성고(成藁)는 하였으나 그 이후(以後) 동왕(同王) 20년까지도 계속(繼續) 추보작업(追補作業)이 진행(進行)되었던 것이다. 필자(筆者)는 이만운(李萬運)에 의(依)한 이 추보작업(追補作業)을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수보(修補)로는 제(第)1차(次) 편찬사업(編纂事業)으로 구분(區分)하여 보았다. 사실(事實) 수보(修補)라고는 하지만 증정문헌비고(證訂文獻備考)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보다 7고(考) 86목(目) 146권(卷)이나 증보(增補)된 것으로 보아 「비고(備考)」의 새로운 재편찬사업(再編纂事業)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妥當)하다.

③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증보작업(增補作業)은 이후에도 계속(繼續)되었으니,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편찬사업(編纂事業)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며 동사업(同事業)은

헌종(憲宗) 11年(1845)에 다시 설청거행(設廳舉行)되었다⁶⁵).

즉, 헌종실록(憲宗實錄) 기사(記事)에 보면, 영조(英祖) 46년에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처음으로 완성(完成)된 뒤, 정조(正祖)에 이만운(李萬運)에 의(依)하여 제1차 편찬사업(編纂事業)이 이루어져 증정문헌비고(證訂文獻備考)를 성고(成藁)하였음은 기술(既述)한 바와 같거니와 그 뒤 50여년(餘年)이 경과(經過)하는 동안에 자료(資料)를 보충(補充)하기 위(爲)하여 설청거행(設廳舉行)하였다. 여기에서 명확(明確)하게 구명(究明)해야 할 문제점(問題點)이 제기(提起)된다. 그것은 이만운(李萬運)이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제(第)1차(次) 증보작업(增補作業)을 완료(完了)시킨 것이 정조(正祖) 14년이나 아니면 정조(正祖) 20년이나 하는 문제이다.

상술(上述)한 바 있거니와 정조(正祖) 6년(年)에 추보작업(追補作業)에 착수(着手)한 지 9년만인 동왕(同王) 1년에 일단(一旦) 성찬(成纂) 시킨 것은 사실(事實)이지만, 전개(前掲)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정조(正祖) 20년간(年間) 기사(記事)와 같이 정조(正祖) 20년에 이르러서야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수보중(修補中)인 증정문헌비고(證訂文獻備考)가 완성(完成)된 것이 확실(確實)하다. 그런데 혹자(或者)는 상인(上引)의 혜종실록(憲宗實錄) 기사(記事)에만 근거(根據)하여 증정문헌비고(證訂文獻備考)가 정조(正祖) 14년에 이미 완성(完成)⁶⁶된 것으로 착각(錯覺)하는 것은 시정(是正)하여야 할 점임을 지적(指摘)하여 둔다. 그리하여 헌종(憲宗) 11년 교서관(校書館)에 개국(開局)하고 총재관(總裁官) 이하(以下) 당랑(堂郎) 43명(名)의 문관(文官)을 차출(差出)하여 작업(作業)에 들어갔으나 이 때에는 작업(作業)을 완성(完成)하지 못했다⁶⁷. 그런데 이때 총재관(總裁官) 권돈인(權敦仁)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서신(書信)에 보면, 이만운(李萬運)이 속행(續行)한 뒤에도 그 아들인 유준(儒準)이 재차(再次) 추보(追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전불성양(全不成樣)」하므로 몇 건(件)의 실례(實例)까지 들면서 시정(是正)할 것을 부탁(付託)하고 있다⁶⁸. 어쨌던 헌종(憲宗) 11년의 속찬사업(續撰事業)은 무위(無爲)로 돌아가고 고종조(高宗朝)에 이르러 광무(光武) 7년(1903)에 다시 편찬사업(編纂事業)이 거행(舉行)되었다. 즉 고종실록(高宗實錄)⁶⁹ 70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예문고(藝文考)」에 보면, 문헌비고(文獻備考)의 계찬(繼撰)을 위(爲)하여 찬집소(纂輯所)를 설치(設置)하고, 특진관(特進官) 박용대(朴容大)가 그 당상(堂上)이 되어 광무(光武) 10년(1905) 12월 12일에 완성(完成)하고, 박용대(朴容大)가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속찬(續撰)을 고준(告竣)하고 교정사(校正事)를 논의(論議)하였으며⁷¹ 본사업(本事業)의 완성(完成)에 신중(慎重)을 기(期)하기 위(爲)하여, 박용대(朴容大), 조정구(趙鼎九), 김만수(金晩秀), 홍승묵(洪承穆), 이중하(李重夏), 박제순(朴齊純), 박지용(朴址容)등을 교정당상(校正堂上)으로 착하(着下)하였다⁷². 또 동월(同月) 20일에 박제순(朴齊純)을 교정총재(校正總裁)로 임명(任命)하여 교정(校正) 전체(全體)를 책임(責任)지게 하였다⁷³.

이러한 절차(節次)를 거쳐 융희(隆熙) 2년(1908)에 거질(巨帙)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250권(卷) 50책(冊)이 간행(刊行)되었으니, 순종실록(純宗實錄) 융희(隆熙) 2년 기사(記事)에 「증보문헌비고성(增補文獻備考成)」⁷⁴이라 되어 있고 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어제후서(御製後序)에도 「...융희(隆熙) 2년 1월...」이라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D. 사례중심(事例中心) 체례(體例)의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

제(第)4단계(段階) 지지편찬사업(地志編纂事業)은 고종조(高宗朝)의 각(各) 군(郡) 읍지(邑誌) 편찬사업(編纂事業)을 말하나, 이에 대(對)하여는 다음 장(章)에서 상술(詳述)하겠으므로 본장(本章)에서는 논의(論外)로 한다.

Ⅲ. 읍지편찬경위(邑誌編纂經緯)

A. 읍지(邑誌)에 대(對)한 개관(概觀)

읍지(邑誌)는 찬자(撰者)에 따라서 관찬읍지(官撰邑誌)와 사찬읍지(私撰邑誌)로 구분(區分)할 수 있다. 그러나 사찬읍지(私撰邑誌)라 하더라도 그 찬자(撰者)가 읍수(邑守)로 재직(在職)하고 있을 때 편찬(編纂)한 것이므로 사찬읍지(私撰邑誌)와 관찬읍지(官撰邑誌)로 구분(區分)함은 무의미(無意味)하며 모두 관찬읍지(官撰邑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읍지(邑誌)는 읍호(邑號)에 따라 「목읍지(牧邑誌)」 「부읍지(府邑誌)」 「도호부읍지(都護府邑誌)」 「군읍지(郡邑誌)(군지(郡誌))」 「현읍지(縣邑誌)(현지(縣誌))」 「진영지(鎭營誌)」 「목장지(牧場誌)」 등으로 호칭(呼稱)되어 오다가 건양원년(建陽元年)의 지방직제(地方職制) 개정(改正) 이후(以後) 읍지(邑誌)의 명칭(名稱)은 「군지(郡誌)」로 단일화(單一化) 되었다.

현존읍지(現存邑誌)를 시대별(時代別), 지역별(地域別)로 살펴 본 바, 우선 시대별(時代別)에 있어서는 임난(壬亂) 이후(以後)의 것 뿐이고, 그 중(中)에서도 고종조(高宗朝), 광무년간(光武年間)의 차서(次序)로 전존(傳存)되고 있으며, 특(特)히 고종조(高宗朝)의 것은 갑오경장(甲午更張) 직후(直後)의 것이 수위(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細部的)인 통계(統計)를 계산(計算)하여 보면 각각(各各) 다음 표(表)와 같다.

또 현존읍지(現存邑誌)를 지역별(地域別)로 보면 호남읍지(湖南邑誌)가 414종(種)(약(約)25.3%), 영남읍지(嶺南邑誌)가 346종(種)(약(約) 21.6%),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가 204종(種)(약(約)12.5%), 경기도읍지(京畿道邑誌)가 144종(種)(약(約)9%)으로서 호남(湖南)·영남(嶺南)읍지(嶺南邑誌)가 가장 많이 전존(傳存)하고 있다.

편찬년대별통계표(編纂年代別統計表)

時 代 別	邑 誌 數
壬亂以前	○
壬亂以後	1,637
英祖以前	58
正祖年間	21
純祖~哲宗年間	58
高宗元年~同11年間	147
高宗12年~建陽元年	272
光武年間	238
隆熙年間	(2)
年紀未詳	843
總 計	1,637

B. 읍지(邑誌)의 편찬경위(編纂經緯)

①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와 읍지편찬(邑誌編纂)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가 조선왕조(朝鮮王朝) 최초(最初)의 관찬지리지(官撰地理志)임은 이미 위에서 언급(言及)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본서(本書)가 완성(完成)되기 까지의 절차(節次)를 상고(詳考)하여 이것이 조선왕조(朝鮮王朝) 읍지(邑誌)편찬의 기원(起源)이 되었으리라는 가정(假定)을 정립(定立)하여 보고자 한다.

즉(卽), 본(本) 지리지(地理志)는 지지(地志) 및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연혁(沿革)을 찬진(撰進)하라는 왕명(王命)에 따라 착수(着手)된 것으로서, 각도(各道)에 지시(指示)하여 일정(一定)한 규식(規式)에 따라 그 도(道)의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지지(地志)를 전상(轉上)하도록 하였는 바, 이러한 절차(節次)에 의(依)하여 완성(完成) 전상(轉上)된 것이 바로 현존(現存)하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이며, 또한 도지(道誌)를 편찬(編纂)하기 위(爲)하여서도 반드시 주부군현(州府郡縣)으로부터 제반자료(諸般資料)의 수집(蒐集)이 불가피(不可避)하였을 것이므로 이것이 읍지편찬(邑誌編纂)의 시초(始初)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 사실(事實)은 당초(當初)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연혁(沿革)을 편찬(編纂)하도록 지시(指示)한 점(點)에 의해서 넉넉히 추료(推料)되거니와, 「지지급주군연혁일체사야(地志及州郡沿革一體事也)」⁷⁵⁾라고 한 변계량(卞季良)의 계(啓)를 보아도 여실(如實)히 뒷받침 되어진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의 편찬절차(編纂節次)는 그 첫 단계(段階)로 각(各)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읍지(邑誌)를 편찬(編纂)하였을 것이고, 다음 단계(段階)로 그 읍지(邑誌)를 찬집수정(撰集修正)하여 도지(道誌)를 편집(編輯)하였을 것이며, 그 도지(道誌)를 모아 최종적(最終的)으로 체계(體系)있게 정리(整理)한 것이 바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라 볼 수 있으니 일국(一國)의 총지(總誌)는 최하(最下) 행정단위(行政單位)인 읍지(邑誌)가 그 경개(梗概)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⁷⁶⁾.

②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와 읍지편찬(邑誌編纂)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를 보충(補充)하기 위(爲)하여 지리지(地理志)의 편찬(編纂)과 지도(地圖)의 작성(作成)에 착수(着手)한 것이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의 편찬작업(編纂作業)이며, 이 작업(作業)의 일환(一環)으로 제도(諸道)에 룬음(綸音)을 내려 「속찬전지(續撰前志)」 하도록 한 것이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이다. 동서(同書)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各)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읍지(邑誌)를 모아 성편(成編)되었으리라 믿어지나 기록(記錄)에서 찾지 못했음은 유감(遺憾)이다. 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수정과정(修正過程)에 있어서 「...기산천지(基山川志) 가□송감사(可□送監司) 이득회답개정(以得回答改正)」⁷⁷⁾라고 한 김종직(金宗直)의 계(啓)에 의(依)해서도 알 수 있다. 중종(中宗)23년(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편찬(編纂)을 명(命)할 때에도 「...여지승람(輿地勝覽) 첨록찬집사(添錄撰集事) 기행이간각도의(既行移于各道矣)…」⁷⁸⁾라 하여 지지편찬과정(地誌編纂過程)을 설명(說明)해 준다. 더우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숙종조(肅宗朝)(36年) 최석정계일작년신이여지승람속찬사정달지후(崔錫鼎啓日昨年臣以輿地勝覽續撰事定奪之後) 분촌외방(分村外方) 각읍책자(各邑冊子) 기진상래(幾盡上來)…」⁷⁹⁾라 한 것을 보면 이상(以上)에서 서술(敘述)한 내용(內容)이 한층 더 뒷받침 되어지리라 믿어진다.

③ 영조조(英祖朝)의 읍지편찬(邑誌編纂)

영조조(英祖朝)의 지지편찬작업(地誌編纂作業)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편찬(編纂)을 중심(中心)으로 이루어졌다. 영조(英祖) 41년에 여지도(輿地圖)를 인진(印進)하고, 읍지(邑誌)를 부진(裒進)토록 홍문관(弘文館)에 명(命)한 사실(事實)이 있는데, 이것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편찬(編纂)에 필요(必要)하였던 자료수집(資料蒐集)을 위(爲)한 조처(措處)일 것이라 생각된다.

영조(英祖)44년편(年編) 「용만지(龍灣誌)」⁸⁰⁾의 서명선(徐明善)이 쓴 서(序)를 보면

「餘至灣之四月 觀察使鄭公 令郡縣各獻其邑誌灣之無志久矣…(여지만지사월 관찰사정공 령군현각헌기읍지만지무지구의…)」라 하였으니, 이것 또한 영조(英祖) 41년의 읍지(邑誌) 부진명령(裒進命令)을 뒷받침하여 주는 자료(資料)라 할 것이다. 하여튼 건륭(乾隆) 35년(영조(英祖) 46년)경(頃)의 읍지(邑誌)를 다소(多少) 찾아 볼 수 있음은 다행(多幸)한 일이며, 이 당시(當時)의 읍지(邑誌)편찬에서 특기(特記)할만한 것은 각읍(各邑)마다 채색지도(彩色地圖)가 예외(例外)없이 첨부(添附)되어 있다는 사실(事實)이다. 물론(勿論) 양성지(梁誠之)의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에도 각도(各道)의 지도(地圖)와 각읍(各邑)의 총도(總圖)가 있었음을 기록(記錄)으로 알 수 있으나⁸¹⁾ 이미 그 책(冊)이 인멸(湮滅)되어 내용(內容)을 확인(確認)할 수 없으니 고증(考證)의 자료(資料)로 쓰기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確實)한 것으로는 영조조(英祖朝)부터 광무년(光武年)간까지 편찬(編纂)된 읍지(邑誌)에 아주 조잡(粗雜)한 것을 제외(除外)하고는 예외(例外)없이 채색지도(彩色地圖)가 첨부(添附)되어 있음을 실사(實事)할 수 있으니, 본격적(本格的)으로 읍지(邑誌)에 채색지도(彩色地圖)를 첨부(添附)한 것은 아마도 영조(英祖)의 여지도(輿地圖) 인진명령(引進命令)에 의(依)해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④ 정조조(正祖朝)의 읍지(邑誌)편찬

정조조(正祖朝)의 읍지(邑誌)편찬사업(編纂事業)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증보작업(增補作業)이 위주(爲主)였다. 그러나, 정조(正祖) 13년 실록기사(實錄記事)⁸²⁾에 정조조(正祖朝)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속성작업(續成作業)에 착수

(着手)하였던 듯하며, 그 방편(方便)으로 제도(諸道)의 읍지(邑誌)를 부취(裒聚)하도록 명(命)하였다. 기사(記事)의 내용(內容)으로 보아 동(同)속성작업(續成作業)은 미성(未成)으로 그쳤으나, 요컨대 제도(諸道)에 읍지(邑誌)를 찬수(撰修)전상(轉上)하도록 지시(指示)했던 것만은 명백(明白)한 사실(事實)이다.

이때에 이루어진 읍지(邑誌)가 다소(多少) 현존(現存)하고 있음도 다행(多幸)한 일이며, 이때의 읍지(邑誌)에도 예외(例外)없이 채색지도(彩色地圖)가 첨부(添附)되어 있음은 하나의 특징(特徵)이라 하겠다.

⑤ 고종초기(高宗初期)의 읍지편찬(邑誌編纂)

규장각도서(奎章閣圖書)와 장서각도서중(藏書閣圖書中)에는 고종초기(高宗初期)(고종(高宗)5~11年)에 편찬(編纂)된 읍지(邑誌)가 많이 보존(保存)되어 있는데, 이는 고종(高宗)5年(동치(同治)7年), 고종(高宗)8年(동치(同治)10年), 고종(高宗)11年(동치(同治)13年)에 성책(成冊)된 것이 대부분(大部分)이며, 권수(卷數) 또는 표지(表紙)에 「동치(同治)○○年 ○○읍지(邑誌)」라 명기(明記)되어 있어 성편년도(成編年度)를 정확(正確)히 알 수 있다.

이것들은 내용(內容)도 풍부(豐富)하고 대개(大概)는 도별(道別)로 합철(合綴)되어 있어 검소(儉素) 및 관리(管理)가 용이(容易)하다. 특(特)히 이때의 읍지(邑誌)에도 읍(邑)마다 그머리에 채색지도(彩色地圖)가 첨부(添附)되어 있음이 특징(特徵)이다.

⑥ 고종(高宗) 31, 2년간(年間)의 읍지편찬(邑誌編纂)

고종(高宗) 31, 2년간(年間)에도 대대적(大大的)인 읍지편찬작업(邑誌編纂作業)이 실시(實施)되었음은 현존(現存)하는 읍지(邑誌)로 미루어보아 알 수 있으나, 위에서도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어떤 필요(必要)에서 어떠한 과정(過程)으로 실시(實施)되었는지는 역시 자세하게 밝힐 수 없으며, 장차(張次)의 숙제(宿題)로 미루어 두기로 하겠다.

그러나 이때에 각읍(各邑) 및 정부(政府)에서 편찬(編纂)한 각도(各道)의 사례집(事例集)이 규장각(奎章閣)에 다수(多數) 현존(現存)하고 있음은 당시(當時) 사례중심(事例中心)의 읍지편찬중기(邑誌編纂重機)를 구명(究明)함에 있어 주목(注目)할 만한 사실(事實)이다.

⑦ 광무(光武) 3년의 읍지편찬(邑誌編纂)

현존(現存)하는 읍지중(邑誌中) 그 수(數)가 가장 많은 것이 광무(光武) 3년에 편찬(編纂)된 각(各)읍지(邑誌)이다. 그것은 대한(大韓) 광무(光武) 3年 4月 26日 수요일자(水曜日字) 「황성신문(皇城新聞)」 소재(所載)의 「읍지수상(邑誌修上)」제하(題下)에 「내부(內部)에서 십삼도(十三道)에 훈령(訓令)하기를 각군읍지(各郡邑誌)를 각기부(各其府)로 도취(都聚) 수정(修正)하여 전송본부(轉送本部)하여 이위을람(以爲乙覽)케 하고 적후존안(赤後存案)하라신 지의(至意)를 봉승(奉承)하얏기 자이훈령(茲以訓令)하노니 영지일지(令到卽地)에 수식관하각군(輸飾管下各郡)하야 지여지도(誌與地圖)를 각이건식(各二件式) 불일정서(不日精書)하야 령도후삼십일내(令到後三十日內)로 간속(趕速) 수정(修呈)하라 하얏다더라」라 한 보도내용(報道內容)으로 뒷받침이 된다.

광무(光武) 3년에 성책(成冊)된 읍지(邑誌)중 장서각(藏書閣)과 규장각(奎章閣)에 현존(現存)하는 것이 많이 있다. 이때의 읍지(邑誌)에도 채색지도(彩色地圖)는 예외(例外)없이 첨부(添附)되어 있으나 그 기법(技法)은 자못 조졸(粗拙)하다.

IV. 읍지(邑誌)의 성격(性格) 및 중요내용(重要內容)

우리나라의 문화(文化)가 고대(古代) 중국문화(中國文化)의 영향을 많이 받았듯이 지(地志) 또한 그러했을 것이니, 조선왕조(朝鮮王朝) 읍지(邑誌)의 개념(概念)을 파악(把握)하기 위(爲)하여 중국(中國)의 지(地志)를 간단(簡單)히 살펴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대(古代) 중국(中國)의 지(地志)란 방역(方域), 산천(山川), 풍속(風俗), 물산(物産) 등이 수록(收錄)된 서(書)를 말하였는데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당이길보찬(唐李吉甫撰), 원화팔년(元和八年), 813년(年))에 이르러 「고적조(古蹟條)」가 추기(追記)되었고,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송(宋), 약사찬(藥史撰))에 이르러서는 「인물(人物)·예문조(藝文條)」가 증기(增記)되었는 바, 이것이 곧 주현지서(州縣志書)의 랍상(濫觴)이 되었다. 원명(元明) 이전(以前)에도 이 체례(體例)에 의거(依據)했으나 인물(人物), 예문(藝文)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폐단(弊端)이 있었다고 한다⁸³⁾.

조선조(朝鮮朝)에서는 「여지승람(輿地勝覽)」 편찬시(編纂時)에 비로서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⁸⁴⁾와 「방여승람(方輿勝覽)」⁸⁵⁾을 참고(參考)하여 종래(從來)의 지리서(地理書)에 인물(人物), 분묘(墳墓), 누관(樓觀), 제영조(題詠條)를 첨입(添入)하였으며, 현존읍지(現存邑誌)는 여지승람(輿地勝覽)의 체례(體例)를 모방(模倣)한 것이라 볼 수 있으니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각(各) 읍지(邑誌)의 내용(內容) 구성(構成)에도 위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와 「방여승람(方輿勝覽)」의 영향(影響)이 간접적(間接的)으로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地志)는 총지(總志), 도회지(都會志), 지방지(地方志), 각(各) 적지(蹟志), 외국지(外國志), 기행(紀行), 지사(地史), 잡기(雜記)로 분류(分類)할 수 있는데 상기(上記)의 도회지(都會志)와 지방지(地方志)가 우리나라의 각(各) 군읍지(郡邑誌)에 해당(該當)된다. 조선왕조(朝鮮王朝) 각(各) 군읍지(郡邑誌)의 서(序)에도 각기(各其) 표현은 다르지만 대개(大概) 「군유지유국지유사야(郡有志猶國之有史也)」라는 뜻이 서술되어 있는 바, 이것은 일국(一國)에 역사(歷史)가 있듯이 군(郡)에도 지(志)가 있다함이니, 환언하면 군지(郡志)란 곧 그 군(郡)의 지방사(地方史)임을 뜻하기도 한다.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읍지(邑誌)란 한 지방(地方)이라는 공간(空間)에 존재(存在)하거나 발생(發生)한 것에 관(關)한 제반사항(諸般事項)을 기술(技術)한 책(冊)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지(地志)는 어느 국한(局限)된 소지역(小地域)의 인문지리(人文地理)」라 할 수 있으며, 이에 특정지역(特定地域)의 연혁(沿革), 군사(軍事), 산업(產業), 교통(交通), 통신(通信), 호구(戶口), 인물(人物), 취락(聚落), 고적(古蹟), 풍속(風俗) 및 제반행정(諸般行政)·경제(經濟)·사회제도(社會制度)등이 총망라(總網羅)되어 있다.

따라서 읍지(邑誌)란 특정지역(特定地域)의 공간적(空間的), 시간적(時間的)인 제반사항(諸般事項)을 항목별(項目別)로 기록(記錄)한 책(冊)이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왕조(朝鮮王朝)의 후반기(後半期)에 들어서면서 부티는 읍지(邑誌)는 지방행정(地方行政)에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한 편람(便覽)이요, 사례집(事例集)으로서의 성격(性格)까지 겸비하게 되었다. 이것은 고종(高宗) 연간(年間)에 성책(成冊)된 읍지(邑誌)의 편찬과정(編纂過程)에서 미리 밝힌 바 있으므로 재론(再論)하지 않겠거니와 읍지(邑誌)가 당시(當時)의 중요정책자료(重要定策資料)로서 작성(作成)하였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事實)이다.

V. 읍지(邑誌)의 활용방안(活用方案)

읍지(邑誌)는 그 읍(邑)의 지지(地志)인 동시(同時)에 자료집(資料集)으로서, 그 지역사(地域史) 및 그 지방(地方) 고유(固有)의 제도적(制度的), 사회구조적(社會構造的)인 측면(側面)을 연구(研究)하는데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의 사료(史料)가 되는 것이다. 특(特)히 여러차례의 병란(兵亂)으로 중요(重要)한 사료(史料)가 많이 일실(逸失)된 오늘에 이르러서는 읍지(邑誌)의 사료적(史料的) 가치(價値)가 더욱 높이 평가(評價)된다. 읍지(邑誌)는 고서(古書)로서 자체(自體)가 가지는 문화재적(文化財的) 가치(價値)는 물론(勿論) 수록(收錄)된 제반자료(諸般資料)를 어떻게 정리활용(整理活用)하느냐 하는 것이 본장(本章)에서 의도(意圖)한 중요(重要) 목적(目的)이며, 또 개개(個個) 읍지(邑誌)는 국부적(局部的)인 자료(資料)에 불과(不過)하므로 전반적(全般的)인 제도(制度)나 현황(現況)을 파악(把握)하려면 제읍지(諸邑誌)의 공시적(公示的) 자료(資料)를 종합(綜合) 분석(分析)하는 과정(過程)에서 실제적(實際的)인 활용방안(活用方案)이 제시(提示)될 것이다.

A. 경제사적(經濟史的) 측면(側面)

첫째, 호구(戶口), 취락(聚落)의 분포(分布), 경지면적(耕地面積), 산물(產物), 수리시설(水利施設), 조운(漕運), 도로(道路), 각종산물(各種產物)의 집결지(集結地)등에 대(對)한 자료(資料)는 산업발전사(產業發展史) 연구(研究)에 귀중자료(貴重資料)가 되며,

둘째, 전제(田制), 세제(稅制), 환곡(還穀), 회촌(會村), 조조(糶糶)등의 자료(資料)는 경제제도사(經濟制度史) 연구(研究)를 가능(可能)케 한다.

B. 지방행정제도사적(地方行政制度史的) 측면(側面)

첫째, 건치연혁(建治沿革), 관할구역(管轄區域)의 리속(離屬), 읍치(邑治)의 이전(移轉), 공해(公廩)의 소재(所在), 지방행정기구(地方行政機構) 및 조직(組織), 지방관(地方官)의 직종(職種)·품계(品階)·정원(定員)·년간용하(年間用下)·경비조달(經費調達)방법(方法), 각종(各種) 잡이금(雜項金)등은 지방행정사(地方行政史)의 연구(研究)에 활용(活用)될 것이며

둘째, 행정사례(行政事例)의 연구(研究)자료(資料)를 특거(特舉)할 수 있다. 특(特)히 선생안(先生案)의 체계적(體系的)인 연구(研究)와 정리(整理)는 지방(地方)행정(行政)발달사(發達史) 연구(研究)와 인명연구(人名研究)에 필수적(必需的)인 자료(資料)가 된다.

C. 지방교육제도사적(地方教育制度史的) 연구(研究)

첫째,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우(祠宇)의 분포현황(分布現況)·설치경위(設置經緯)·정사인물(亭祀人物)·법제(法制) 및 절목(節目)등으로 교육(教育)의 규모(規模)와 교육정도(教育程度)를 알 수 있으며, 특(特)히 학전(學田), 학위전(學位田)등으로 교육재원(教育財源)의 배경(背景)을 엿볼 수 있다.

D. 군제사적(軍制史的) 측면(側面)

군역대상자(軍役對象者)의 규모(規模), 정군(正軍) 및 보인(保人)의 수(數)와 구성비율(構成比率), 육수군(陸守軍)과 선군(船軍)의 지방조직(地方組織), 양천(良賤)의 비역관계

(備役關係), 군경비(軍經費)의 충당방법(充當方法)등으로 군제(軍制)와 군사력(軍事力)을 파악(把握)할 수 있다.

E. 교통(交通)·통신사적(通信史的) 측면(側面)

도로(道路), 조운(漕運), 봉수(烽燧), 역원(驛院), 수로(水路), 교량(橋梁), 진도(進度)등은 당시(當時)의 교통로(交通路) 및 통신수단(通信手段)등의 연구(研究)자료(資料)가 된다.

F. 어문학적(語文學的) 측면(側面)

지명(地名)과 관련(關聯)되는 신화(神話), 전설(傳說)의 집대성(集大成)이 가능(可能)하며, 지명(地名)을 통(通)해서 상고어(上古語)의 재구(再構)가 가능(可能)하며 비(碑)·갈등(葛藤)의 기문(記文)과 제영(題詠)은 제반(諸般) 어문학(語文學) 연구(研究)자료(資料)가 된다.

G. 문화재(文化財)의 총정리(總整理)

읍지(邑誌), 성지(城址)등과 산성(山城), 형승(形勝)등의 역사적(歷史的) 자연적(自然的) 기념물(記念物)과 궁실(宮室), 행궁(行宮), 육원(陸園)등의 건조물(建造物)과 서판(書板), 책판(冊版), 묘지명(墓地銘), 서적(書跡), 금석문(金石文)은 서지연구자료(書誌研究資料)가 된다.

H. 서지적(書誌的) 측면(側面)

방각본(坊刻本)의 간지(刊地)를 구명(究明)하는데 불가결(不可缺)의 자료(資料)이며, 책판(冊版)의 분포상황(分布狀況)으로 각지방별(各地方別) 또는 국가적(國家的)인 저술활동(著述活動)의 구명(究明)에 좋은 자료(資料)가 된다.

VI. 결론(結論)

이상(以上)에서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중요(重要) 관찬지지(官撰地志) 편찬경위(編纂經緯)를 고찰(考察)하고, 그것이 읍지편찬(邑誌編纂)에 미친 영향(影響)을 구명(究明)함과 아울러, 읍지(邑誌)의 편찬경위(編纂經緯)·중요내용(重要內容) 및 활용방안(活用方案)을 강구(講究)하여 보았거니와 이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A.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중요(重要) 관찬지지(官撰地志) 편찬경위(編纂經緯)를 중요(重要) 지지(地志)의 편찬사업(編纂事業)을 중심(中心)으로 사단계(四段階)로 구분고찰(區分考察)하였으며,

B. 일국(一國)의 총지(總志)는 각(各) 지방(地方) 자료(資料)를 수집(蒐集) 정리(整理)한 것이며, 일차적(一次的)으로 각(各) 군읍지(郡邑誌)를 작성전상(作成轉上)하여 도지(道志)를 편집(編輯)하고 도지(道志)를 모아 총지(總志)가 성편(成篇)되었음을 밝혔다.

C. 읍지(邑誌)의 편찬경위(編纂經緯)를 살펴본 바,

첫째, 현존자료(現存資料)와 문헌기록(文獻記錄)의 포괄적(包括的)인 보충(補充)으로 읍지(邑誌)가 집중적(集中的)으로 편성(編成)된 년도(年度)를 파악(把握)해서 이를 구분(區分)한 다음 각각(各各) 해단계(該段階)에 있어서의 편찬경위(編纂經緯)와 특징(特徵)을 구명(究明)하였으며,

둘째, 시대별(時代別)에 있어서는 조사대상(調查對象) 읍지(邑誌) 1,627종(種)이 모두 임란이후(壬亂以後)의 것으로서 영조조(英祖朝)까지의 것이 3.5%, 정조조(正祖朝)의 것이 1.3%, 고종조(高宗朝)의 것이 40%, 년기미상(年紀未詳)이 50%임을 밝힘과 동시(同時)에 특(特)히 고종조(高宗朝), 광무년간(光武年間)의 것이 많이 전존(傳存)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셋째, 지역별(地域別)에 있어서는 호남(湖南), 영남(嶺南)의 차례로 읍지(邑誌)가 전존(傳存)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는 해지역(該地域)이 팽활(宏濶)하여 군현(郡縣)의 수(數)가 많고 타지방(他地方)에 비(比)해 문운(文運)이 진작(振作)된 데에 기인(基因)하였음을 구명(究明)하였고,

넷째, 읍지(邑誌)는 관찬(官撰)이 대부분(大部分)이며, 사찬(私撰)이라 할지라도 대체(大體)로 찬자(撰者)가 공직중(公職中)에 위(在)한 것이므로 읍지(邑誌)는 관찬(官撰)의 성격(性格)을 띤 거(거)이라고 구명(究明)할 수 있으며,

다섯째, 읍지편찬(邑誌編纂)의 체례(體例)에 있어 영조(英祖)·정조(正祖)때의 것은 여지승람(輿地勝覽) 체례(體例)를 본따(本)는 것이며, 고종조(高宗朝)의 것은 사례중심(事例中心)으로 위(在)했음이 그 특징(特徵)임을 알 수 있고,

여섯째, 읍지(邑誌)에 채색지도(彩色地圖)가 첨부(添附)된 것은 영조조(英祖朝) 소찬(所撰)의 읍지(邑誌)에서부터 비롯(來)한 것으로서, 이후(以後)의 읍지(邑誌)에도 예외(例外) 없이 채색지도(彩色地圖)가 첨부(添附)되어 있음을 구명(究明)하였다.

D. 읍지(邑誌)의 중요내용(重要內容)을 뽑아 분석적(分析的)으로 고찰(考察)하여 역사(歷史)·지리(地理)는 물론(勿論) 제분야(諸分野)에 걸친 활용방안(活用方案)을 구체적(具體的)으로 제시(提示)하였다.

- 1) 世宗實錄 卷26, 6年甲辰11月丙戌條.
 - 2) 上揭書, 14年壬子正月己卯條
 - 3) 慶尙道地理志 序
 - 4) 上揭書
 - 5) 上揭書.
 - 6) 上揭書.
 - 7) 上揭書.
 - 8) 文獻備考, 藝文考3, 史記 「世祖11年」 國朝寶鑑卷13. 世祖朝4, 12丁 「丙戌11年 11月」 條.
 - 9) 成宗實錄 卷32, 4年癸巳 7月甲午條
 - 10) 世宗實錄 卷148 書.
 - 11) 李□,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 III(科學·技術史), 1970. pp.697—8 「人口比較表, 參照)
 - 12) 金田培, 朝鮮朝의 邑誌研究, 碩士學位論文(1972).
 - 13) 端宗實錄 卷11, 2年 甲戌 3月 辛巳條.
 - 14) 李燦, 前揭論文
 - 15) 世祖實錄 卷2, 元年乙亥 8月 乙卯條.
 - 16) 동국여지승람 서
 - 17) 成宗實錄 卷 138, 13年壬人 2月 壬子條.
 - 18) 上揭書.
 - 19) 慶尙道續撰地理志 序.
 - 20) 上揭書.
 - 21) 成宗實錄 74, 7卷年丙申12月丙戌條.
 - 22) 東國輿地勝覽 序
 - 23) 上揭書.
 - 24) 成宗實錄 卷239, 13年壬人 3月甲午條.
 - 25) 國朝寶鑑 卷 16, 20丁.
 - 26) 增補文獻備考 卷243, 藝文考 2, 歷代著述5丁.
 - 27) 前簡恭作編, 古鮮冊譜, 東洋文庫叢書第11.
 - 28) 東國輿地勝覽, 躋.
 - 29) 成宗實錄 卷200, 18年丁未 2月戊辰條.
 - 30) 上揭書, 18年丁未二月庚辰條.
 - 31) 上揭書, 同一條.
 - 32) 上揭書, 卷202, 18年丁未 4月辛卯條.
 - 33) 東國輿地勝覽 跋.
 - 34) 國朝寶鑑 16卷, 20丁.
- 增補文獻備考 卷243, 藝文考二, 歷代著述.
- 35) 盧思慎等 受命撰[1481], 乙亥字本 1冊(卷 37·38) 國立中央博物館 藏.
 - 36) 盧思慎 等 受命撰(1481), 癸丑字本 1冊(卷)11·12·13) 서울大學校所藏.
 - 37) 成宗實錄, 卷 138, 13年壬人 2月壬子條.
 - 38) 燕山君日記 卷58, 11年 乙丑7月戊戌條.
 - 39) 中宗實錄 卷63, 23年 戊子8月 己酉條.
 - 40) 新增東國輿地勝覽 跋
 - 41) 上揭書 跋.
 - 42) 中宗實錄 卷72, 27年 壬辰正月癸亥條.
 - 43) 上揭書, 27年壬辰正月乙卯條.
 - 44) 上揭書, 27年壬辰二月乙卯條.
 - 45) 肅宗實錄 卷8, 5年己未 3月癸亥條.
 - 46) 上揭書 卷32, 25年己卯 6月丙午條.
 - 47) 增補文獻備考 卷243, 藝文考2, 歷代著述, 肅宗 25年 「令續編國朝寶鑑」 條
 - 48) 肅宗實錄 卷34上, 25年庚辰 3月癸丑條.
 - 49) 上揭書, 26年庚辰 6月丙寅條.
 - 50) 上揭書 卷35下, 27年辛巳 11月甲辰條
 - 51) 上揭書 卷27, 13年 己酉 6月庚午條.
 - 52) 英祖實錄 卷113, 45年己丑 12月 壬申條.
 - 53) 增補文獻備考 卷243, 藝文考2, 歷代著述10丁.
 - 54) 英祖實錄 114, 46年庚寅 正月 己丑條.
 - 55) 上揭書, 46年庚寅正月 己未條.
 - 56) 上揭書, 同年 5月 乙丑條.
 - 57) 上揭書, 同年 庚寅□ 5月 辛酉條.
 - 58) 上揭書, 同年 8月 戊寅條.
 - 59) 增補文獻備考 卷245, 藝文考4, 御製 24丁, 「增補文獻備考」 條.
 - 60) 正祖實錄 卷16, 7年癸卯 9月丁酉條.
 - 61) 上揭書 卷24, 11年丁未 10月己亥條.
 - 62) 上揭書 卷31, 14年庚戌 11月庚寅條.
 - 63) 群書表記(全), 影印本, 學文社, 서울, 1970, p.337. 「證訂文獻備考 246卷 寫本」 條.
 - 64) 證訂文獻備考 卷243, 藝文考2, 歷代著述, 13丁 「正祖二十年」 條.
 - 65) 憲宗實錄 卷12, 11年乙巳正月壬申條.
 - 66) 申□鎬, 影印序, 增補文獻備考, 東國文化社, 서울, 1971.
 - 67) 上揭書 卷243, 藝文考2, 16丁 「憲宗十一年」 條.
 - 68) 院堂集 卷1, 52丁, 「答□齋權□仁問」 條.
 - 69) 高宗實錄 卷43, 光武7年 8月 23日條.
 - 70) 增補文獻備考, 藝文考2, 歷代著述, 18丁, 「光武七年」 條.
 - 71) 高宗實錄 卷47, 光武10年 12月 12日條.
 - 72) 上揭書, 10年 12月 13日條.
 - 73) 上揭書, 10年 12月 29日條.
 - 74) 純宗實錄 卷2, 隆熙 2年 7月 1日條.
 - 75) 世宗實錄 卷26, 6年甲辰 11月丙戌條.
 - 76) 龍城誌 序.
 - 77) 成宗實錄 卷202, 18年丁未四月辛卯條.
 - 78) 中宗實錄 卷62, 23年戊子 8月己酉條.
 - 79) 前間添作編, 前揭書,

「證訂文獻備考，藝文考二，歷代著述」。

- 80) 龍灣誌 序。
- 81) 成宗實錄 卷138, 13年壬寅 2月壬子條。
- 82) 正祖實錄 卷27, 13年乙酉 5月庚午條。
- 83) 四躔全書總目 卷68, 史部24, 地理類一, 序。
- 84) 90卷, 明, 天順 5年, 1461.
- 85) 70卷, 宋, 祝瞻禪。